

의안번호	2202750
의 퇴 인	임호선의원
회 답 일	2024.10.11.
추계번호	24D273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조(목적)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범위에 생명·신체 외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범죄로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제적 피해를 추가함	의무규정
	제3조(정의)제1항제4호나목 신설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조(목적)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3조(정의)제1항제4호나목 신설	

2. 상세 사유

□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범위에 재산범죄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 추가(안 제1조·제3조제1항제4호나목)

- 현행법은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함)으로 규정하고, 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가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함)을 지급하도록 규정¹⁾
- 개정안에 따라 재산상의 피해를 받은 사람까지 구조피해자에 포함하도록

1) 현행법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하여, 구조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구조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2024년 법무부 예산 ‘범죄피해구조금(1135-302)’사업에 기타보전금(310-04목)으로 98억 7,000만원이 편성됨
- 또한, 구조금은 현행법 제18조,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조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게 되는데, 구조금액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또는 피해 당시의 월급여·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월급여등”이라 함)을 감안하여 지급함

[표 1] 유족구조금 지급 기준

지급기준(월급여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40개월
2.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32개월
3. 위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24개월

주: 단 유족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음
 자료: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2] 장해구조금 지급 기준

지급기준(월급여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												
장해 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 12급	13, 14급
개월 수	40 개월	36 개월	32 개월	28 개월	24 개월	20 개월	16 개월	12 개월	8 개월	4 개월	3 개월	2 개월

자료: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중상해구조금 지급 기준

지급기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에 의하여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에 각각의 경우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범죄행위 발생 당시 구조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6/6
2. 1에 해당하는 친족이 없더라도 범죄행위 발생 당시 구조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5/6
3. 위의 두 경우 외의 경우	3/6

주: 단, 중상해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음
 자료: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그러나 비용 산출에 필요한 재산피해자 인원이나 피해자의 월급액 등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강아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아름	02-6788-4664	krm7839@nabo.go.kr